

영등포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10.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0호로 2014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 조례운영에 내실을 기하  
고자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8호 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문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함.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르면 건물 등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건물의 소유주 등은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 중 제8호 서식이 제14호 서식(건물번호판 교부대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 관 련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6.>

11. 제15조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